

## 고무관련 산업분야의 특허관리

백승준

### 1. 서 설

최근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을 보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고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한층 더 실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고무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취지와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을 가능한 쉽게 이해하여 고무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 2. 지식재산권

#### 2.1 지식재산권 정의

‘지식재산권’이란 1)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또는 공업소유권, 2)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3)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권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창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새로운

발명 또는 고안 등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 실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 2.2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 2.2.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이 가능하다.

##### 2.2.2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보호 가능하다.

##### 2.2.3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백승준

1981 동아대학교 공업화학과 학사  
2006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2009 동아대학교 나노공학과 박사  
1985~ 중소기업청 사무관  
1996  
1996~ 특허청 심사관  
2003  
2003~ 신태양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장  
2010~ 특허법인 신태양 부산사무소  
대표  
2012

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하다.

2.2.4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각종 벤처기업 지원 혜택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3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구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대상	물건, 방법	물건	물건	상표, 서비스표
보기	전화기	송수화기	탁상전화기 (반구형, 네모형)	상호, 마크
존속 기간	출원 후 20년	출원 후 10년	등록 후 15년	등록일 10년 갱신 영구

#### 2.3.1 특허

특허법 제2조제1호에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1) 자연법칙 자체, (2) 발견, (3)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4)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 (5) 기능, (6) 단순한 정보의 제시, (7) 미적창조물, (8)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9)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10) 미완성 발명과 같은 유형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sup>2</sup>

그리고 상기와 같이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이외에도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게 하는 발명
- (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

기구 등에 관한 발명 등)

- 성 보조기구와 관련된 발명
- 인체를 사용하는 발명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세포를 포함하는 물건)
- 국방상 필요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등과 같은 발명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3.2 실용신안

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등록 요건)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형상을 갖지 않는 고안(고무 조성물, 치약, 페인트, 잉크 등: 특허의 대상이 됨)과 재료의 2차적 가공에 특징이 있는 고안(철판, 철봉과 같은 판상체, 봉상체 등)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3.3 디자인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에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를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디자인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4) 및 5)의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sup>5</sup>

- 1) 부동산.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승차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
- 2)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기체, 액체, 전기, 광, 열 및 음향 등)
- 3)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집합으로 된 것(시멘트, 설탕 등)
- 4) 합성물의 구성각편(構成各片). 다만, 조립완구의 구성각편(構成各片)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5)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

분(양말의 뒷굽모양, 병 주둥이 등)

6)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 모양 등)

### 2.3.4 상표

#### 가. 상표 제도의 목적

상표법 제1조에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표제도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상표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뚜렷이 하고 있다.<sup>6</sup>

상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하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상품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비로써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 나. 용어의 정의<sup>6</sup>

##### 1) 상표(Trademark)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리고 여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이 해당된다.

##### 2) 서비스표(Service Mark)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광고, 금융, 요식업 등의 상호)

##### 3) 단체표장(Collective Mark)

‘단체표장’이라 함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협동조합 등)

##### 4) 업무표장(Business Emblem)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

##### 다. 상표의 구성요소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요소에 따라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입체상표, 결합상표 등으로 불려진다.

##### 라. 상표등록의 요건<sup>7</sup>

아래의 예시에 해당되는 것들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자동차; CAR, 피복: 청바지, 호도로 만든 과자; 호두과자 등)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청주: 정종, 직물: TEX 등)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산지 표시(인삼: 금산, 사과: 대구, 굴비: 영광, 모시: 한산 등)

-품질 표시(상, 중, 하, 優, 良, 可, 특급, 특선, 특별, 일품, 명물, 순정, 원조, 우수, SUPER, NEW, 으뜸, KS, JIS, 무공해, 청정, GREEN, BIO 등)

-원료 표시(두부: 콩, 양복: WOOL, 창문틀: 알미늄, 브라우스: SILK 등)

-효능 표시(약품: 잘나, 화장품: 보들보들, 전기냉장고; Hitek 등)

-용도 표시(비료: 원예, 콜라: DIET COLA, 가방: 학생, 의류: 베이비 등)

-수량 표시(2짜, 100그램, 10봉지, 3꾸러미, 325리터 등)

-형상 표시(일반상품: 소형, SLIM, 연필: 4각

표, 신발: 265 mm 등)

-생산방법, 가공방법 표시(햄: 훈제, 책상: 조립, 구두: 수제 등)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국가명,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군의 명칭, 핀란드어, OXFORD, VIENNA LINE, 뉴욕, MANHATTAN, GLONDON TOWN 등)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문자 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로 구성된 표장, 숫자상표인 경우에는 2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표장, 도형상표인 경우에는 흔히 사용되는 표장으로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ㄱ, 삼태극 등)

### 3.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3.1 원천발명과 개량발명

현재 특허 출원되고 있는 발명들은 거의 대부분 타인의 선행발명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술적 성과를 도출하는 발명들이다. 즉 원천발명을 개량하여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내는 발명이 대부분으로서 이러한 발명을 개량발명이라 한다. 이러한 개량발명들도 발명의 정의에 해당하고 나아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특허등록의 요건에 해당하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도시한 그림 1을 중심으로 컵의 개량 과정을 예를 들어 원천발명과 개량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상기 그림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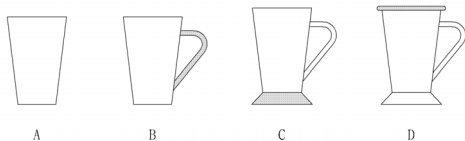


그림 1. 컵의 개량 과정을 나타낸 도면

이 커피, 주스 등과 같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본체로만 이루어진 A 컵을 최초로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 물론 A 컵은 실제로는 새로운 것 물품이 아니지만 본고에서는 원천발명과 개량발명의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물품으로 가정을 한 것이다.

甲이 최초로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본체만으로 이루어진 컵을 개발하였으므로 원천발명의 특허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때 甲이 지식재산권인 특허권에 대한 상식이 무지하다면 甲은 A 컵의 원천발명만으로 만족하고, 컵에 대한 모든 특허권을 甲 자신만이 갖게 되는 것으로 착각할 것이다.

한편 지식재산권인 특허권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는 乙이 원천발명인 A 컵을 본다면, 본체만으로 구성된 A 컵에 커피와 같은 뜨거운 액체의 내용물을 담게 될 경우 컵의 본체가 뜨거워지므로 사람들이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체의 측면 벽에 손잡이가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B 컵’을 개량하고, 이 B컵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발명은 원천발명인 A 컵에 손잡이를 부착하여 개량한 개량발명이라고 한다.

乙은 더욱 나아가 B 컵이 컵의 밑면적이 좁아 식탁이 조금만 흔들려도 컵이 쉽게 넘어져서 내용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컵의 밑면적을 넓게 한 즉 B 컵의 문제점을 개량하여 ‘컵의 밑면에 받침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C 컵’을 창작하여 특허등록을 받게 된다. 그리고 乙은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C 컵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고 ‘컵 본체의 상부 개구부에 둥근 형태의 테두리를 형성시킨 D 컵’을 개발하여 컵의 상부 개구부가 입술에 닿는 촉감을 부드럽게 개선한 컵을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받게 된다.

상기에서 A 내지 D 컵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甲은 최초로 A 컵을 개발한 원천발명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B 내지 D의 컵에 대한 개발 기회를 乙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甲은 자신이 개발한 A 컵이 B 내지 D의 컵에 비해 시장성

이 없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천 발명에 의한 상품보다는 개량된 발명의 상품이 시장성이 높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컵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甲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것을 착각에 빠져 원천발명을 甲 자신이 개량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게 된 것이다.

한편 乙은 甲의 A 컵의 기술적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개량한 B 내지 D의 컵에 대한 특허등록을 받았지만 원천기술의 특허권자의 甲의 승낙 없이는 B 내지 D의 컵을 마음대로 생산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乙은 경쟁 상대자인 甲의 A 컵의 개발을 중단시킨 효과를 가지게 된다.

즉 乙이 취득한 개량발명들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본체 부분이 甲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乙은 B 내지 D의 컵을 마음대로 제조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이 따르지만 甲의 경우에도 원천발명인 A 컵으로만은 시장성이 없게 되므로 乙이 개발한 B 내지 D의 개량 컵을 생산하기 위해 乙과 협의를 하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서 살핀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법 제도는 비록 원천 기술이 특허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이용하고 개량한 발명도 진보성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특허 등록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만,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권자는 원천 기술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아니하면, 자신의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를 실시할 수 없지만 원천발명 특허권자인 甲도 乙이 발명한 개량 발명을 실시할 수가 없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개량발명 특허권자는 원천 기술 특허권자에게 크로스 라이선스를 좋은 조건에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 3.2 특허청구범위의 권리범위 해석

특허청구범위란 특허출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출원인이 독점권을 요구하는 권리범위를 기술한 것으로서, 출원발명을 선행기술로부터 구별되도록 나타냄과 함께 특허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특허청구범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상기 그

림 1을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甲이 개발한 A 컵은 원천발명이며, 이를 보고 乙이 각각 개발한 B 내지 D의 컵은 개량발명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각각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A 컵: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본체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컵
- B 컵: 본체로 이루어진 컵에 있어서, 본체의 측면 벽에 손잡이가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컵
- C 컵: 본체의 측면 벽에 손잡이가 부착된 컵에 있어서, 컵의 밑면에 받침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컵
- D 컵: 본체의 측면 벽에 손잡이가 부착되고, 밑면에 받침대가 형성된 컵에 있어서, 컵의 상부 개구부에 테두리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컵

상기에서 B 컵은 A 컵을 보고 개량한 컵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밑줄 친 내용과 같이 ‘본체로 이루어진 컵에 있어서’란 전제부의 단서가 기재된다. 이는 B 컵이 A 컵을 보고 개량한 것을 의미하며, B 컵에 대한 권리범위는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본체로 이루어진 컵에서 ‘손잡이’에만 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C 컵은 B 컵을 보고 개량한 것으로서 ‘본체의 측면 벽에 손잡이가 부착된 컵에 있어서’란 전제부의 단서가 기재되며, 이때 C 컵의 권리범위는 본체의 측면 벽에 손잡이가 부착된 컵에서 ‘밑받침’에만 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D 컵은 C 형태의 컵을 보고 개량한 것으로서, ‘본체의 측면 벽에 손잡이가 부착되고, 밑면에 받침대가 형성된 컵에 있어서’란 전제부의 단서가 기재되며, D 컵의 권리범위는 본체의 측면 벽에 손잡이가 부착되고, 밑면에 받침대가 형성된 컵에서 ‘테두리’에만 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개량발명의 경우 특허청구범위에서 밑줄 친 부분의 전제부는 인용하고자 하는 선행기술을 나타내며, 전제부의 기재 내용이 길수록 일반적으로 권리범위가 좁아지게 되며 출원인의 권리는 전제부 후반에 기재되는 부분(굵은 글씨체로

기재된 부분)의 기술만이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그림 1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는 전제부의 단서가 기재되지 아니한 A 컵이 가장 넓고, 그리고 전제부의 단서를 기재한 내용이 짧은 순서인 B 컵, C 컵 및 D 컵 순으로 특허청구범위의 권리범위가 좁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 4. 고무 조성물에 대한 특허

### 4.1 고무 조성물의 특허

먼저,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무 조성물의 구성성분이 A+B+C로 이루어진 조성물이라 하면, 새로운 고무 조성물을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통상적인 고무 조성물의 구성성분인 A+B+C에 새로운 구성성분인 D 및/또는 E의 구성성분이 추가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D 및/또는 E의 구성성분이 추가됨에 따른 새로운 효과 또는 현저한(또는 종래보다 우수한) 효과가 반드시 발생하여야 한다.

2) 통상적인 고무 조성물의 구성성분인 A+B+C에서, 종래의 구성성분인 A 및/또는 B 및/또는 C를 A' 및/또는 B' 및/또는 C'등으로 구성성분을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효과 또는 현저한(또는 종래보다 우수한) 효과가 반드시 발생하여야 한다.

상기 1), 2)의 내용과 같이 통상적인 고무 조성물의 구성성분인 A+B+C에 새로운 구성성분인 D 및/또는 E의 구성성분이 추가되거나 또는 A' 및/또는 B' 및/또는 C'등으로 구성성분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고무 조성물에 비해 새로운 효과 또는 현저한(또는 종래보다 우수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4.2 고무 조성물의 특허청구범위 기재 형식

상기 4.1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고무 조성물의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1) 통상적인 고무 조성물의 구성성분인 A+B+C에서, 새로운 구성성분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예를 들면 아래 3가지 기재 방법 중 택일하여 기재한다.

-A+B+C+D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무조성물.

-A+B+C+E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무 조성물.

-A+B+C+D+E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무 조성물.

2) 통상적인 고무 조성물의 구성성분인 A+B+C에서, A' 및/또는 B' 및/또는 C'등으로 구성성분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예를 들면 아래 6가지 기재 방법 중 택일하여 기재한다.

-A'+B+C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무 조성물.

-A+B'+C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무 조성물.

-A+B+C'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무 조성물.

-A'+B'+C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무 조성물.

-A'+B+C'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무 조성물.

-A+B'+C'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무 조성물.

### 4.3 고무 조성물의 구성성분 기재 방법

A+B+C+D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고무 조성물의 특허 출원 예를 들어보면, 모든 특허 출원인들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특허의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려고 고무 조성물의 각 구성성분들의 구성 비율을 A는 1~99 중량%, B는 1~99 중량%, C는 1~99 중량%, D는 1~99 중량%로 각각 한정된 특허내용을 기재하여 출원하려고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모든 특허들이 고무 조성물의 각 구성성분의 구성 비율을 최대한 넓게 1~99 중량%로 한정하여 특허를 출원한다면 창작자가 창작한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올바른 특허내용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특허 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아래의 내용과 같은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표 2의 기재 내용과 같이, 고무 조성물에 가장 많이 함유된 구성성분인 A가 최대

표 2

올바른 특허청구범위 기재 예	잘못된 특허청구범위 기재 예
A : 68~80 중량%	A : 1~99 중량%
B : 10~17 중량%	B : 1~99 중량%
C : 7~10 중량%	C : 1~99 중량%
D : 3~5 중량%	D : 1~99 중량%
○ (80+10+7+3=100)	× (99+1+1+1=103)
○ (68+17+10+5=100)	× (1+99+99+99=298)

80 중량%가 함유되고, 최소 성분인 D가 최소 3 중량% 함유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올바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은 구성성분인 A의 최대값인 80 중량%와 B, C, D의 각각의 최소값인 10 중량%, 7 중량%, 3 중량%의 합이 100 중량%가 되도록 제한함으로써, 구성성분비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5. 결 론

그동안 국내 고무관련 산업은 특허권,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특별히 인식하지 않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지만 최근 급변하는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기업체들이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개발한 기술들은 특허권을 확보

하여야만 기업체가 생존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도래해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를 통해서 고무관련 기술분야의 산업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타인의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자신의 기술 또는 사업체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1. 특허법(일부개정 2012. 3. 15 법률 제11117호) 제 2조제1호, 제29조..
2.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2011. 1 개정, 특허청).
3. 실용신안법(일부개정 2012. 3. 15 법률 제11114호) 제4조.
4. 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 2012. 3. 15 법률 제 11111호) 제2조제1호.
5. 디자인 심사기준(개정 2011. 12. 30 특허청 예규 제64호) pp 2-3.
6. 상표법(일부개정 2012. 3. 15 법률 제11113호) 제 1조, 제2조.
7. 상표심사기준(2011. 12. 29 특허청 예규 제63호) pp 4-23.